

보도 일시	2021. 1. 4.(화) 11:00 1. 5.(수) 조간	배포 일시	2021. 1. 4.(화)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451)
		담당자	연구관 양미희 (044-201-2457)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733억 원 신규과제 지원 -

주요 내용

- 2022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개요
 - (공고 목적) 올해 지원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지
 - (예산 규모)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등 12개 사업 733억원 규모 신규과제 지원
 - (지원 대상)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생산자단체 등
 - (공고 시기) 2022년 1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참고)
 - (공고 방법)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www.mafra.go.kr, www.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5일(수),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67억원),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58억원),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110억원),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 고도화(122억원),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73억원),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101억원)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명	사업 공고	평가 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추진 (21.12.24.)	3월중	8,944	7,258	1,68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0.주간	3월중	972	972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1.10.주간	3월중	1,582	-	1,582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6,722	6,722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5,829	5,829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1.10.주간	3월중	11,017	2,100	8,9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1.10.주간	3월중	12,226	11,376	850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7,341	7,341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875	1,875	-
기술사업화지원	1.17.주간	3월중	5,160	-	5,160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590	1,590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1.17.주간	3월중	10,050	10,050	-
총 12개 사업			73,308	55,113	18,195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 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국민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식품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

담당 부서 <총괄>	농업생명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451)
		담당자	연구관	양미희 (044-201-2457)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시혜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이주영 (044-201-2121)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삼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민동명 (044-201-2329)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욱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정찬민 (044-201-2481)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재수 (044-201-1851)
		담당자	서기관	김태형 (044-201-1855)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2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2022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733억 원 이내

사업명	사업공고	평가선정	지원 예산 (백만 원)		
			합계	지정공모	자유응모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추진 ('20.12.24.)	3월중	8,944	7,258	1,68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1.10.주간	3월중	972	972	0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1.10.주간	3월중	1,582	0	1,582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6,722	6,722	0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5,829	5,829	0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신규	1.10.주간	3월중	11,017	2,100	8,917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신규	1.10.주간	3월중	12,226	11,376	850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신규	1.10.주간	3월중	7,341	7,341	0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875	1,875	0
기술사업화지원	1.17.주간	3월중	5,160	0	5,160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1.17.주간	3월중	1,590	1,590	0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신규	1.17.주간	3월중	10,050	10,050	0
총 12개 사업			73,308	55,113	18,195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으로 신청 가능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① 기업의 부도
-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⑤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 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중복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공고 내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중 1개의 자격으로 신청)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어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 제출서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특성,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되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22년 한시 적용)**
 -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차년도(2022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 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2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20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개발비 부담기준을 완화**

- 기업의 현금 부담 납부기간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전까지로 허용(기간 연장)
- 총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 80% 이하) 및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13% → 10% 이상) 지원 기준 일부 변경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대기업, 공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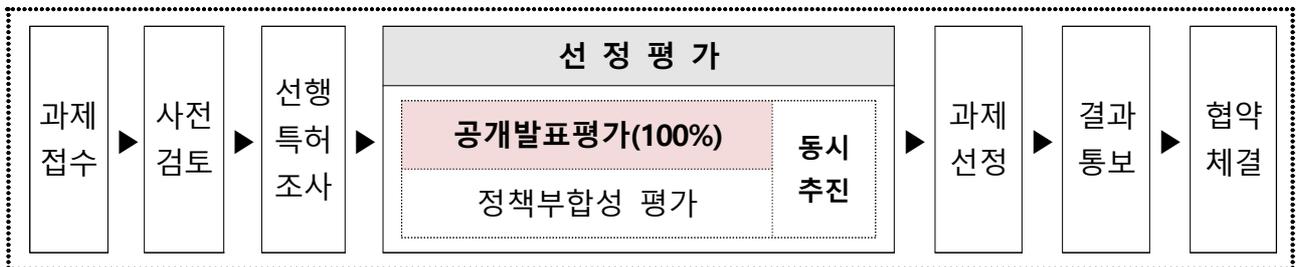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절차



-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와 동시에 실시함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 실시 가능

*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추후 제출, 평가 전 안내 예정)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함

□ 단계 협약

총 연구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5년 이내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
	3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
	4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
5년 초과	5년 9개월	1년 9개월	2년	2년
	6년 9개월	1년 9개월	3년	2년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구분	주요 평가 내용	관련 규정
지정공모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 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자유응모 과제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별지 제10호, 제11호
	<정책부합성 평가>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축산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다만, 종전 운영규정(훈령 제336호, 2019.9.16.)에 따라 가점 부여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점 적용(예, 과학기술대상 포상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등)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혁신실

사업명	연구개발혁신실	연락처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식품융합팀	061-338-9772
■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식품융합팀	061-338-9773
■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농생명산업팀	061-338-9762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5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4
■ 기술사업화지원	식품융합팀	061-338-9775
■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바이오시스템팀	061-338-9782
■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농생명산업팀	061-338-9765
■ 디지털육종 전환 기술개발	종자생명TF팀	061-338-9874